

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,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조례안은 그간 서울시의 장기안심상가 지정과 협약

전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장기안심상가에
대한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
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,
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
하는 내용입니다.

○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살피주시고,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